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26 - 88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고시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 공중보건 및 생활상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1월 10일

노원구청장 

1. 지정 관련 근거

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

나. 「서울특별시 노원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2. 지정 목적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유해야생동물의 배설물, 털 날림 등으로 인한 위생상 피해와 건물 부식·훼손 등의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함

3.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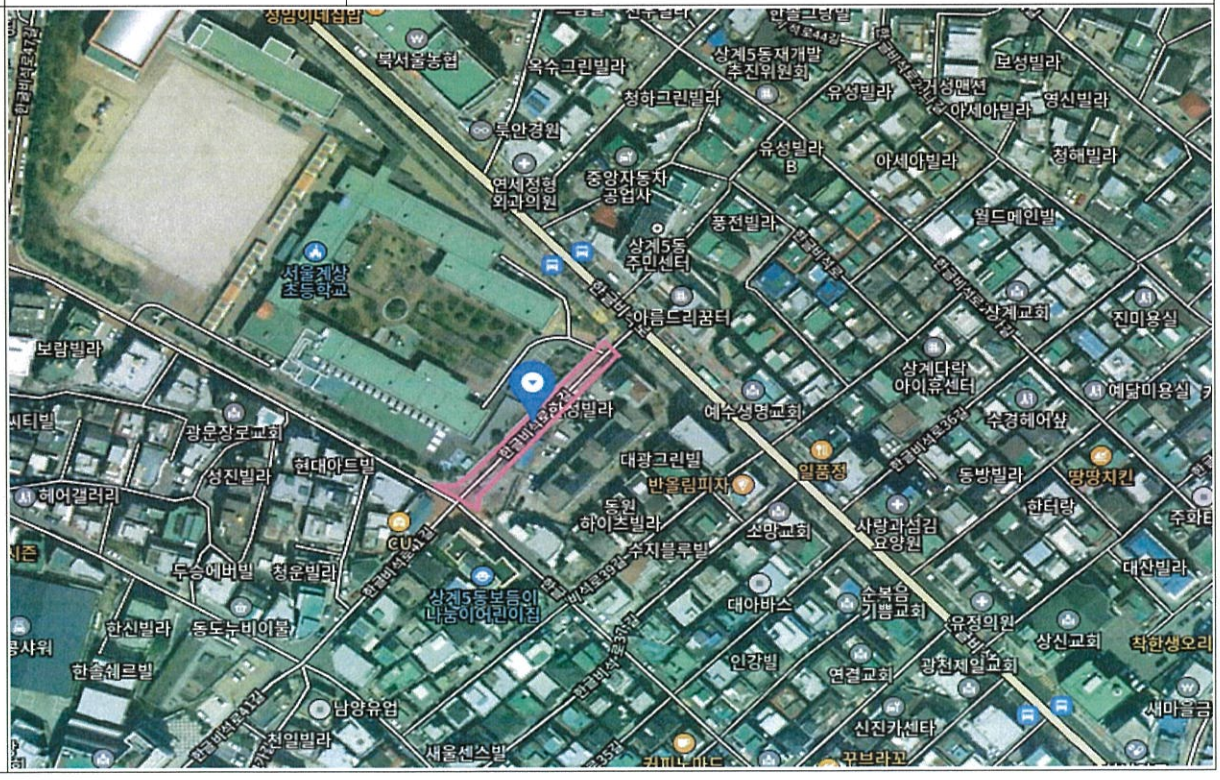
4. 금지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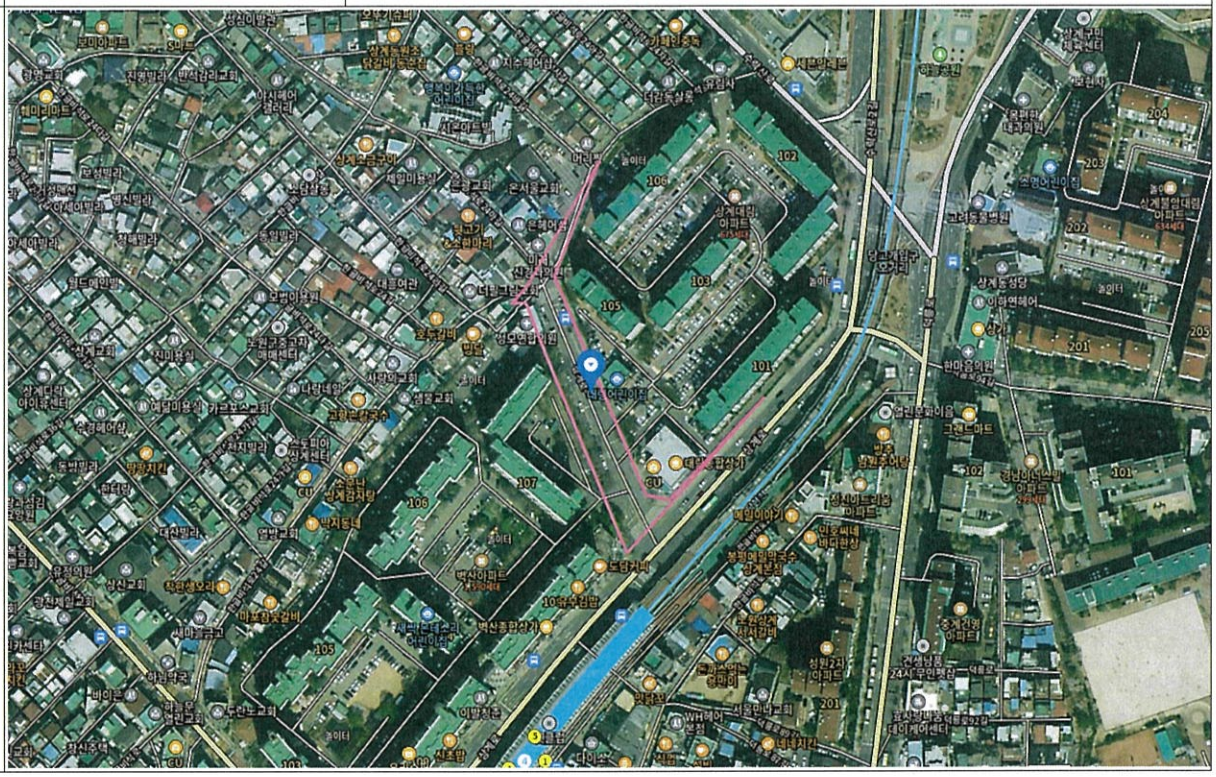
2026년 11월 10일 ~ 별도 해제 시까지

2. 금지구역 지정 대상지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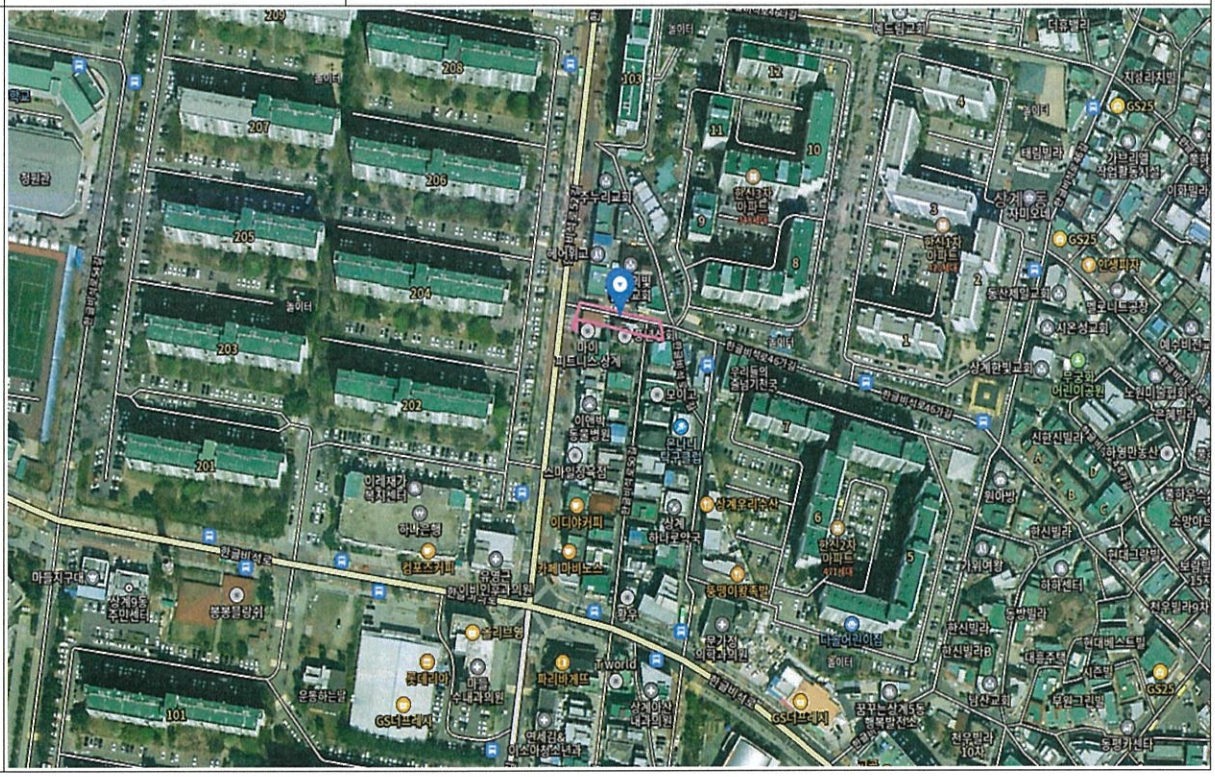
연 번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고
1	도로 및 기타 (민원발생 등)	계 상 초 등 학 교	상계동 159-13	574 ㎡	
2		상 계 대 림 아 파 트 일 대	상계동 172-6	3,623 ㎡	
			상계동 172-7	126 ㎡	
3		풍 년 상 회 일 대	상계동 457-1	368 ㎡	
			상계동 456-120	783 ㎡	
4		공 릉 중 · 태 릉 초 일 대	공릉동 91-3	4,201 ㎡	
			공릉동 87-2	3,983 ㎡	
			공릉동 81-3	4,276 ㎡	
			공릉동 87-4	1,69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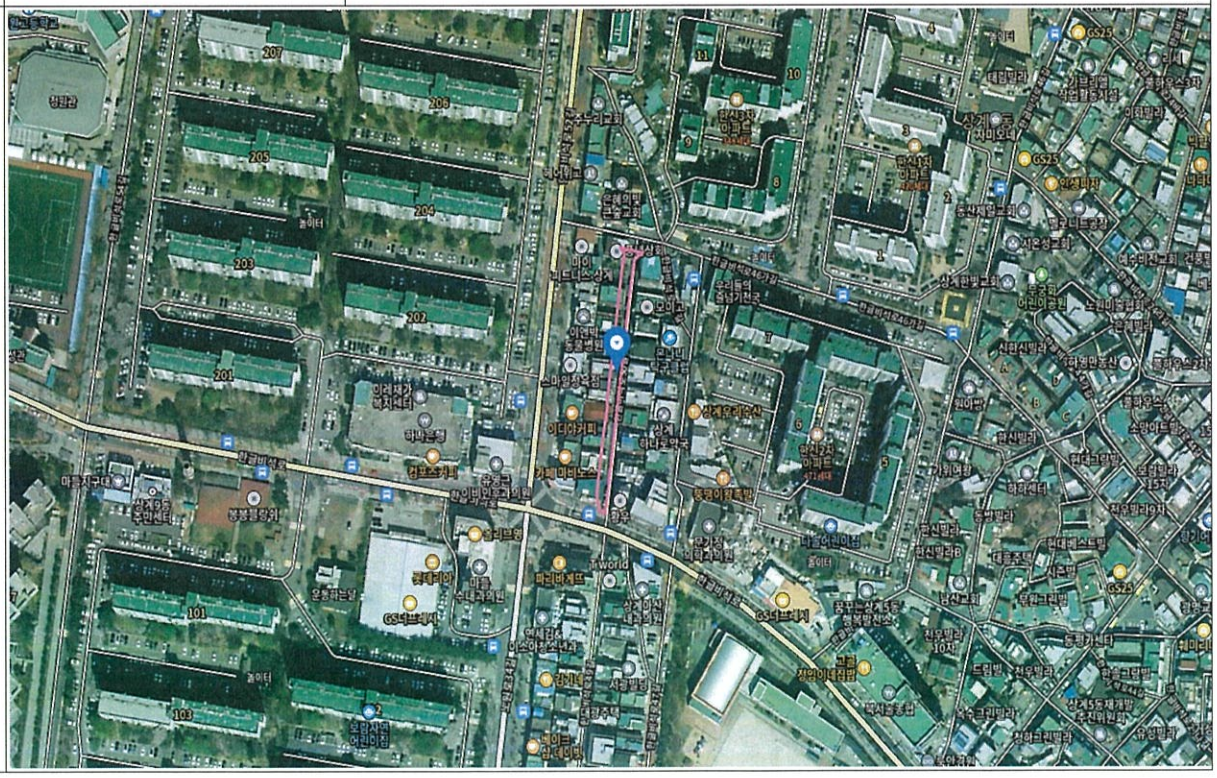
3. 지정 위치 및 범위

연번	명칭	위치
1	계상초등학교	상계동 159-13
범위		

연번	명칭	위치
2	상계대림아파트 일대	상계동 172-6
범위		

연번	명칭	위치
2	상계대림아파트 일대	상계동 172-7
범위		

연번	명칭	위치
3	풍년상회 일대	상계동 457-1
범위		

연번	명칭	위치
3	풍년상회 일대	상계동 456-120
범위		

연번	명칭	위치
4	공릉중·태릉초 일대	공릉동 91-3
범위		

연번	명칭	위치
4	공릉중·태릉초 일대	공릉동 87-2
범위		

연번	명칭	위치
4	공릉중·태릉초 일대	공릉동 81-3
범위		

연번	명칭	위치
4	공릉중·태릉초 일대	공릉동 87-4
범위		

붙 임 | 유해야생동물의 종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유해야생동물(제4조 관련)

1.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큰부리까마귀

2.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류 및 오리류(오리류 중 원앙이, 원앙사촌, 황오리, 알락쇠오리, 호사비오리, 뿔쇠오리, 붉은가슴흰죽지는 제외한다)

3. 비행장 주변에 출현하여 항공기 또는 특수건조물에 피해를 주거나, 군 작전에 지장을 주는 조수류(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제외한다)

4. 인가 주변에 출현하여 인명·가축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멧돼지 및 맹수류(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제외한다)

5.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6.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큰부리까마귀

7.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糞便)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8.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양식업,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낚시터업,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내수면어업 등의 사업 또는 영업에 피해를 주는 민물가마우지